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재규정 정비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3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제재규정 정비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3. 5.
3. 회 부 일: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Ⅲ. 검토의견: 제재규정 정비

-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회사등¹⁾을 편입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삭제 및 제72조제1항제3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신설>	제72조(과태료) ① ----- ----- -----.
4. ~ 12. (생략) ② · ③ (생략)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제16조²⁾),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1)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

2)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등을 감안하여 설립시 금융위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³⁾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8조⁴⁾)⁵⁾.

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금융지주회사의 편입신고 대상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① 설립시 금융위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③ 지주 인가 또는 자회사 편입승인으로 지주그룹 내 들어온 자회사등,

④ 금융업 밀접업 회사(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 회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회사,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회사 등)

4)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결합 신고도 면제되어 중복규제를 피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 이를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대상회사인 자회사등을 신고하지 않고 편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제70조제4항 및 제5항)⁶⁾.

□ 개정안은 행정상 단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같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취지임.

□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고, 과태료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⁷⁾ 제재규정의 타당성 여부는 위반하는 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하 생략)

6)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이하 각 호생략)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지배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건전성, 자본적정성, 주식교환의 적정성, 경쟁제한 여부 등을 심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
- 반면,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편입할 때 예외적으로 승인이 아닌 신고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즉, 신고 대상 회사의 업무 성격,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사전승인제와 신고제의 규제 목적과 위반시 사회적 위험성 차이 등 고려할 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승인의무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부과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지주회사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유사 의무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재 수준을 고려할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금융지주회사법」상 제재 비교 >

제재	위반 사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5조 위반) 금융지주회사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제15조의2 위반) 금융채 발행 조건 등 위반 (제16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 편입 (제19조 위반) 자회사등의 다른 회사 지배 관련 규정 위반 (제6조의3, 제6조의4 위반) (제47조제1항단서 위반) 자회사등 사이의 위탁금지업무 위탁 (제48조 위반) 자회사등의 행위 제한 위반 (제60조 위반) 인가를 받지 않고 해산 또는 합병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 편입
1억원 이하 과태료	(제5조의2제1항 등 위반)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5조의3 위반) 금융지주회사 명칭 표시 제한 위반 (제6조의2제1항 위반) <u>금융지주회사 자본금 감소, 정관 변경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u> (제10조제3항 위반)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주식 처분 명령 위반 (제34조제5항 등 위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 결정 (제34조제6항 등 위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의무 위반한 금융지주회사등 (제54조 위반) <u>업무보고서 미제출, 허위 작성</u> (제55조 위반) 재무제표 미공고, 허위 공고 (제56조 위반)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제51조 등 위반) 장부·서류 은닉, 검사 방해 등 검사 관련 의무 위반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금융지주회사는 제외)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행정상 경미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항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04
